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776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김위상・이종배・김선교

임이자 · 송언석 · 박성훈

김형동 · 서범수 · 박성민

이인선 • 우재준 의원

(119]

제안이유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 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무 중개·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을 고용서비스 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각주체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개선·보완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

나.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 및 주체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건전한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안 제5조 및 제45조)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기업(구인자)에 대한 취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민간과의 협업 사항을 구체화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의무(안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직업소개 사무 종사자는 고용관계 성립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안 제18조제3항ㆍ제4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그 고용한 종사자에게 고용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바.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안 제19조제1항ㆍ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를 이유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구직자 보호 간의 비례를 달성함.

사. 모집에 참여한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8조제1항ㆍ제2

항)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채용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모자가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 특례조항 마련(안 제40조 및 제41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무중개·제공 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

법률 제 호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여 근로자등의 직업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직업안정기관"이란 고용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

정기관을 말한다.

- 3.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찾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4. "직업지도"란 구직자 또는 학생 등이 각자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5. "직업소개사업"이란 직업소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 나. 직업소개의 대가를 받고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 6.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 8. "모집"이란 구인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 등을 받아서 모집을 대신하는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나이,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서비스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 할 때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고용서비스 제공주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는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 3. 구직자 또는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 4. 고용정보를 수집 · 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 6.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 7.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업무

-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 9.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및 모집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업무
- 10.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
- 11.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이를 위한 지도· 지원 업무
- 12. 일자리 여건을 파악하여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각 산업 분 야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업무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또 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국내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 업무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제2장(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직업안정기관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 하는 사람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그 밖에 채용행사 등 공동사업 추진 및 일자리 발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복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행하거나 이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16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2.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3. 제2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 4. 그 밖에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업

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공동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의 업무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와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위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자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공동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1절 통칙

- 제8조(담당직원) ① 국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서비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용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하다)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구인·구직의 발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 직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직업소개

- 제10조(구인의 신청) ①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하여 수행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 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구직의 신청) ①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 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직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구직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할 것
- 2. 구직자가 취업하여 수행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알릴 것

제3절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 제13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 1. 처음으로 취업하려는 사람
 - 2. 육체적·정신적 장애, 장기실업,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나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에 협력할 수 있다.

- 제15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1절 직업소개사업

- 제16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되는 구직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 ②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 개
- 4. 학교등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되는 구직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사무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등록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 분사무소의 설치·등록 절차 및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분사무소를 설치·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가 제20조에 따라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

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종사자로 하여금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일정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실무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직업소개의 요금 등)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를 이유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 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종사자에 한정하여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후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 제21조(겸업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제22조(직업소개 시 금지·제한 사항) ①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이하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 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해서 는 아니 된다.
-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9세 미만의 구직자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 직업소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직업소개사업자등은 구직자가 취업하여 수행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로부터 제공받아 구직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것
 - 2.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할 것

-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 등록 등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5. 제1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할 것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4조(준용)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 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절 직업정보제공사업

-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 (제16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방법,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변경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 공사업을 하는 자(이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 록 게재할 것
 -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제39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정보를 점검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 제27조(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다.
 -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건설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 범위와 해당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외의 사람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국외 공급 근로자의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선발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모집

- 제28조(모집의 원칙) ① 모집을 하는 자는 문서·방송·정보통신망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거나 취업설명회 또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 다.
 - ② 구인자로부터 위탁 등을 통해 모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모자는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국외 취업자 모집의 신고) ① 국외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 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에 따른 모집방법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 자 와 그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모집의 응 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지도·감독 등 제1절 지도 및 감독

- 제32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구직자 보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구직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33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제17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장부·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있다.
- 제34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8

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 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 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5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 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

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 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4. 컴퓨터통신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사이트 차단 및 폐쇄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 제37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제44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업신고"라 한다)를 한자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다시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 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등록·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 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 한 경우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이 법 또는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사람
-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②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업소개 사무 담당자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6조·제17조·제27조·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에 대한 특례

- 제40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 신고)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얻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그 계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통보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신고대상인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받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1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 준수사항) ① 제40조에 따라 노무 중개·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최근 3년 이내의 자료 및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 1.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이용약관 또는 이용조건을 노무제공자·노무수령자, 노무제공·수령의사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과 형태로 제공
 - 2. 노무제공의사가 있는 자에게 노무내용, 노무제공 이행조건, 노무대가(공제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 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사전통지
 -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계약 체결의 중개 등과 관 련된 자료 및 정보의 보존
 - 4. 노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 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 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다른 법령에서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직업 생활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 체결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42조(비밀보장 의무) ① 직업안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1조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해당 모집의 응모자는 정보공개로 알게 된 사업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각 각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구직자·근로자 또는 구직자·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제27조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③ 제49조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있다.
 - ④ 제49조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 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제사업의 범위
 - 2. 공제계약의 내용
 - 3. 공제금

- 4. 공제료
-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4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5조(자료 협조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의 휴 폐업 정보
 -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 입 여부(취득·상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 3. 개인식별번호
 - 4. 장애 상태 및 정도에 관한 정보
 - 5. 북한이탈주민 확인증명서

-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 7. 국가기술 · 전문자격증 취득 정보
- 8. 체류자격 등 출입국 정보
- 9. 범죄사실 및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 10. 법인 등기사항 관련 정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신고, 등록 및 허가와 관련된 자료의 요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할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공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연계에 대해서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46조(수수료)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8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9조(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 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모집을 한 자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모집을한 자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 ·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거나 허가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 3.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 5. 제31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 6. 제39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 4. 제42조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
-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금품을 받은 자
 - 2.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회비 외의 금품을 받은 자
 -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한 자
 -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연수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7.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33조를 위반하여 장부·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9.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한 자

- 10.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등록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의 등록 신청 전 실무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모집의 위탁·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인자로부터 모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안정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받은 자는이 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직업안정법」에 따른다.
- 제7조(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 행하거나 위탁한 사업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수행하거나 위탁한 사업으로 본다.
- 제8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안정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자는 그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자로 본다.
- 제9조(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일은 이 조에 따른 교육 이수일로 본다.
 - ② 종전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 개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업상담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

당 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업상담원(고용된 직업상담원으로 보는 동거가족을 포함한다)이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관계 성립일은 이 조에 따른 교육 이수일로 본다.

제10조(사업자협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협회는 제4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를 "「직업안정 및 고 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제1항 중"「직업안정법」 제33조"를"「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의4"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직업안정법」 제18조"를"「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직업안정법」 제18조"를"「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직업안정법」 제36조"를"「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제1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를 "「직업안정 및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업안정법」 제19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13호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3조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기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5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직업안정법」 제4조의4"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직업안정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과 제45조의3제2항"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③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에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37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제44조, 제45조 및 제5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직업안정법」 제19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⑤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직업안정법」 제33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직업안정법」 제33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33조"를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직업안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